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875

발의연월일: 2024. 11. 26.

발 의 자:김위상·김소희·김성원

김형동 • 우재준 • 김선교

김승수 · 강승규 · 강대식

박성훈 · 김예지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구조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산업현장에 외국인 인력활용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여 숙련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체류기간, 사업장 변경 등을 우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유학생 등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는 등 인력활용방식을 다양화하는 한편 효과적인 취업알선을 위해 방문취업동포에 대해 민간 취업알선기관의알선을 허용하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는 등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7조, 제10조의2 신설, 제11조, 제18조 및 제18조의2제2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업종"을 "업종(또는 직종)"으로 하고, 같은 항 제 4호 중 "제18조의2제2항"을 "제18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기관은 시험에 응시하려는"을 "한국어능력시험 또는 제5항에 따른 자격요건 평가의 실시기관은 시험에 응시하거나 또는 평가를 받으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국내에서 체류 중인 유학생 등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 춘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포함되는 외국인은 한국어능력시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제3항 중 "업종"을 "업종(또는 직종)"으로, "제7조제1항"을 "제7

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외국인근로자"를 "외국인근로자(제1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체결"을 "체결하거나 갱신"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체류자격 변경에 관한 특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포함된 사람으로서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후"를 "후(제10조의2에 따라 체류자격을 변경한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후)"로 하고, "사항"을 "사항 및산업안전보건 관련 사항 등"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후단 중 "업종"을 "업종(또는 직종)"으로 한다.

제18조 중 "날"을 "날(제10조의2에 따라 체류자격을 변경한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날)"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근로자는 제1항 및 제18 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 내에서 취업활 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다만, 1회에 연장받을 수 있는 취업활 동 기간의 상한은 3년으로 한다.

- 1.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 로자로서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 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 2.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 상 근무한 근로자.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업무 숙련도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을 이수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 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3.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어능력, 사회통합 수준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근로자
- 4. 연장받는 취업활동 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제1호의 사용자와 체결하고 있는 근로자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조의2"를 "제18조의2제1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중에"를 "입국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업종"을 "업종(또는 직종)"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입국 전"을 "입국 전 또는 제10조의2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 전"으로 한다.

제2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사유 및 변경 허용 횟수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26조의2제1항제1호 중 "지역별"을 "직종별·지역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활동 기간 제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18조 및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자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제18조의2제2항 본문 및 각 호의 개정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 ①	제4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②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외국인근로자 도입 <u>업종</u> 및	2 <u>업종(또</u>
규모 등에 관한 사항	<u>는 직종)</u>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u>제18조의2제2항</u> 에 따른 외국	4. <u>제18조의2제3항</u>
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	
장에 관한 사항	
5. (생략)	5.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7조(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제7조(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국
	내에서 체류 중인 유학생 등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포함
	<u>할 수 있다.</u>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u>③</u>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	

성할 때에는 외국인구직자 선 발기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 록 한국어 구사능력을 평가하 는 시험(이하 "한국어능력시험" 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하며,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기관 선 정 및 선정취소, 평가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③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기관 은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 료는 외국인근로자 선발 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 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u>제1항</u>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 기능 수준 등 인력 수 요에 부합되는 자격요건을 평

항에 따라 외국인구직자 명부
에 포함되는 외국인은 한국어
능력시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한국어능력시험 또는 제5항
에 따른 자격요건 평가의 실시
기관은 시험에 응시하거나 또
는 평가를 받으려는
⑤제1항 및
제2항

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자격요건 평가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한다)으로 하며, 자격요건 평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① ·②(생 략)

-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외국인 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제7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 ④・⑤ (생략)
- ⑥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근로계약) ① ~ ③ (생

<u>.</u>
<u>⑥</u> 제5항
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업종(또는 직종)</u>
<u>제7</u>
<u> 조제1항 및 제2항</u>
④·⑤ (현행과 같음)
6
외국인근로자(제1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
· 제9조(근로계약) ① ~ ③ (현행

략)

④ 제18조의2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외국인근로자 와 사용자는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생략)

<신 설>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 ① 외국 지인근로자는 입국한 후에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 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제11조의3에 따른 외국인 취업 교육기관에서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周知)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이하 "외국인 취업교육"이라 한다)을

	과 같음)
	4
	체결하거나 갱신
	⑤ (현행과 같음)
제	10조의2(체류자격 변경에 관한
	특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외국
	인구직자 명부에 포함된 사람
	으로서 제9조제1항에 따라 사
	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
	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제24조
	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	11조(외국인 취업교육) ①
	<u>후</u> (제10조
	의2에 따라 체류자격을 변경한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 변경
	<u>허가를 받은 후)</u>
	<u>사항 및 산업안</u>
	전보건 관련 사항 등

받아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 제12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 례) ① · ② (현행과 같음) 례) ① · ② (생 략) ③ 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 의 장의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 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 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업종(또는 직종)-----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 게 특례고용가능확인을 하여야 한다.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18조(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외 제18조(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 -----날(제10

조의2에 따라 체류자격을 변경

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신 설> 한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날)-----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근로자는 제1항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수 있다. 다만, 1회에 연장받을수 있는 취업활동 기간의 상한

1.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 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은 3년으로 한다.

2.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업무 숙 련도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 ② (생 략)
-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 요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 18조의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 근로자로서 제18조의2에 따라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재입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을 이수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 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어능력

- 3.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어능력, 사회통합 수준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근로자
- 4. 연장받는 취업활동 기간이시작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제1호의 사용자와 체결하고있는 근로자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u>④ 제1항 및 제2항-----</u>

> -----<u>제18조의2제1항</u> <u>및 제3항</u>-----

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한 외 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출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이 법 에 따라 다시 취업하도록 할 수 있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중에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
 하지 아니하였을 것
 나. ~ 라. (생 략)
- 2. 정책위원회가 도입 <u>업종</u>이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내국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정하는 사 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을 것
- 3. (생략)
- ② ~ ④ (생 략)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 소)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 렁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나

1
가. 입국한 날부터 1년간
나. ~ 라. (현행과 같음)
2 <u>업종(또</u>
<u>는 직종)</u>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세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
소) ①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 가능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 1. (생략)
- 2. 사용자가 <u>입국 전</u>에 계약한임금 또는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 3. (생략)
- ② (생략)
-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저 허용) ① ~ ④ (생 략) <u><신 설></u>

제26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 ① 지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행정기 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입국 전 또는 제10
조의2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
<u>전</u>
O (원체기 가ბ)
3. (현행과 같음)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
고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
업활동 기간이 연장된 근로자
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사
유 및 변경 허용 횟수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26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 ①

 1. 업종별・지역별
 인력수급 자
 1. ------ 직종별・지역별 ----

 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